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28

2018년 4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4월 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복지본부장)

1. 제안이유

2016.9.29.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직 개편, 시설 신규 설치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사항 조례에 반영
 - 시설의 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 선정절차 등 규정
- 나. 복지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 주관부서 변경

- 노인복지관(어르신복지과 → 인생이모작지원과)
- 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전환 및 신규 설치에 따른 현행화
 - 복지본부 소관 노숙인 복지시설 시립시설로 전화(쪽방상담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신설(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라.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 완료(신설·강화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 완료(비상설위원회의 자동해지 및 임기에 관한 규정)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 완료(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본부 조직개편 내용과 신규 시립시설의 설치 등 사회복지 시설 현황 등의 변경사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복지본부 조직개편(17.5.12)에 따른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관리부서 변경(어르신복지과 → 인생이모작지원과) ②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 ③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립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신규 설치
 ④ 사회복지법인 수탁법인 공개원칙 강화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이라고 하겠음.

2 주요내용별 검토

가. 복지복부 조직개편 반영(안 별표)

- 집행부는 지난 2017년 5월 복지본부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 연령 상향(65→70세) 검토 등 환경적 변화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 정책을 체계화하고
 - 중장년기 사회참여 경험을 노년기 사회참여(여가)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중 장년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정책' 통합 추진을 위하여 (종전) 어르신복지 과 업무에서 '어르신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된 사업과 시설에 관한 업무'를 인 생이모작지원과로 이관조치하였음.

○ 금번 개정안(별표)은 복지본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후속조치로서 평가할 수 있으나, 시장의 조직편성권에 따른 (독점적인 성격의) 조례안 제출권을 감안할 때, 조직법정주의를 고려하여 조직개편안을 사전에 조례상 반영하거나 조직 개편 직후에 신속히 조치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음.

나.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시립전환 반영(안 별표)

- 집행부는 제277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원안가결)을 받을 바 있음.1)
- 기존의 쪽방상담소를 구립・법인운영 시설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시립시설로 전환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단체)을 서울시가 직접 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동의안'을 제출한 바, 서울시 5개 쪽방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취지가 인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었음.
- 의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시립시설로 전환된 바, ① 쪽방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② 자활·자립지원, ③ 민간자원 연계, ④ 주거 안전 환경 향상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¹⁾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원회, 2017.12.15.

<표> 시립 쪽방상담소 현황

(2018년 2월 기준)

구별	밀집지역	상담소명	소재지	개소일	시설		수탁기	위수탁
1 2	(주민수)	0 11 0	/11/1	/비ㅗ ㄹ	형태	규모	관	기간
종로구	돈의동 (550)	시립 돈의동 쪽방상담소	종로구 수표로22길 22	'00.3.15	구청 복지관	158 m²	(재)대한 구세군 유지재단	'18.2.1~ '23.1.31
종로구	창신동 (323)	시립 창신동 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0라길 31	'03.4.22	구청 소유 건물	168 m²	(사복) 우리모두 복지재단	'18.2.1~ '23.1.31
중구	연세빌딩 남대문경찰서 중림동 (781)	시립 남대문 쪽방상담소	용산구 한강대로 379	'00.3.28	시 임차 건물	103 m²	(재)대한 구세군 유지재단	'18.2.1~ '23.1.31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1,004)	시립 서울역 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37	'01.4.4	시 임차 건물	132 m²	(사복) 온누리 복지재단	'18.2.1~ '23.1.31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1동 (516)	시립 영등포 쪽방상담소	영등포구 영등포동4 가 426-2	'01.3.16	시 임차 건물	149 m²	(사) 사막에 길을내는 사람들	'18.2.14~ '23.2.13

○ 금번 개정안(별표)은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의회 의결과 그에 따른 추진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 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립 아동복지시설(서부아동상담센터) 신규 설치 반영(별표)

- 집행부는 제277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원안가결)을 받을 바 있음.²⁾
- 은평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은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업무를

²⁾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맡고 있으나, 정서·행동 장애, 학교 부적응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바, 기존 꿈나무마을 초록꿈터³⁾ 시설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상담기능을 포함한 전문적치료를 맡을 수 있는 '서부아동상담센터'을 신설하고, 같은 시설을 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고자 하는 내용으로 '같은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

- ① 600여명의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던 시립 꿈나무마을 시설 내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며 ② 아동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 ※ 학대아동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시설로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가 유일함. 학대 아동 치료 등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서부아동상담센터도 꿈나무 마을 요보호 아동이외에 다른 시설에서 보호받거나 신고 된 학대 아동에 대해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에 대해 의회는 꿈나무마을 보호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꿈나무마을 기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음.
- 금번 개정안(별표)은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의회 의결과 그에 따른 추진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 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라. 공개모집 원칙 강화를 통한 수탁자 선정 공정성과 경쟁력 강화(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② (생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³⁾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은 초록꿈터(18세 미만 남성), 파란꿈터(18세 미만 여성), 연두꿈터(영아)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 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 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 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 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단서 조항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이 아닌 예외적으로 5년
 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4)」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명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기간
-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에 대한 고용 · 근로조건 개선 노력
-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 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또한, 현행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원칙을 명시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로 인해 복지시설 수탁기관과의 위탁 재계약 체결 횟수 제한이 없는 관계로,
 같은 법인의 반복 재계약이 관행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사유화에 기인한 안일
 한 시설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으로 한 번 선정되면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무한정 시설을 운영하는 등 무사안일한 운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바, 이에 같은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하겠음.
-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재계약을 1회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16개 광역시도 조례는 없으나, 자치구는 일부 채택하고 있음.

-- 자치구별 위탁 및 재계약 관련 현황

- ◆재계약 횟수 1회 갱신 가능 자치구: 9개구
- 위탁계약기간 3년. 1회 한하여 갱신 가능 (1) : 강서구
- 위탁계약기간 5년, 1회 한하여 갱신 가능 (8) : 중구,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재위탁 3년), 송파구, 강동구

 검토하건데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재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공개모집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의 수탁으로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질 수준 향상을 위한 취지인 바,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마. (시립)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 강화(안 제7조부터 제9조)
- 1)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절차 신설(안 제7조)
- 개정안(안 제7조)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시설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 장')이 9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 록 하였음.
- 집행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선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정하여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는 바, 이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사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 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 의 장이 정한다
- 2) 사회복지시설 지도 및 감독 강화(안 제8조 및 제9조)
- 개정안(안 제8조)은 ① 수탁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 전반을 지도한 감독을 하며 ② 필요한 경우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및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③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조치를취할 수 있도록하되, ④ 수탁기관에게 사전(事前) 의견진술 의견 기회를 부여하였음.
- 또한 개정안(안 제9조)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과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여 위탁이 취소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당 수탁기관에게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
- 검토하건데, 무사안일하게 (시립)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합 리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하도
 록 시장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⑧ --- (생략) ---
-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 ② --- (생략) ---

3 결론

- 금번 개정안은 복지본부 조직개편안과 노숙인시설(쪽방 상담소) 시립 전환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립 아동복지시설 신규 설치 상황을 반영하고, 시립 사 회복지시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 원칙 강화로 수탁자 선정의 공정 성을 확보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 로써 조례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부합하는 내용인 바.
 - 집행부 관할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법인·시설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와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바,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안 제출권은 시장에게 귀속하고 있으므로, 조직법정주의를 감안하여 조직 개편 사항을 사전 또는 신속하게 조례상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 바, 입법상의 지연 또는 실기(失期)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V. 토론요지: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28

제출년월일: 2018년 3월 20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016.9.29.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조직 개편, 시설 신규 설치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조례에 반영
 - 시설의 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 선정절차 등 규정
- 나. 복지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 주관부서 변경
 - 노인복지관(어르신복지과 → 인생이모작지원과)
- 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전환 및 신규 설치에 따른 현행화
 - 복지본부 소관 노숙인 복지시설 시립시설로 전환(쪽방상담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신설(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라.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 완료(신설·강화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 완료(비상설위원회의 자동해지 및 임기에 관한 규정)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 완료(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 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 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관리 등)"을 "(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 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 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 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u>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u> (제3조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여성기족정책실	·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u>보호</u> 및 자립지원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ㆍ치료ㆍ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여성기족정책실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가족담당관)	· 서울시 한부모가 족 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 치 료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ㆍ치료ㆍ보호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이로 250길 44-142 (상계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5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 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 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 □ □ □ □ □ □ □ □ □ □ □ □ □ □ □ □ □ □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 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신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겸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 동)	중중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중중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0 1 1 1 1 1 1 1 1 1 1	∘ 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 시립 홍은동 미래형직업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재활시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행복플러 <u>스보호</u> 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 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번동 <u>보호</u> 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 번길 14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 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본부	。시립상 이 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상이군경 복지 <u>프로그</u> 램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상계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발달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시립서대문 농 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 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시립양평쉼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복지본부	·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 가)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자활지원과)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수표로22길 22 (돈의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0라길 31 (창신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한강대로 379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37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영등포동 4가)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 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정신질환자 보호	
	·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22길 4 (대조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75,5-137, 9,4-1)	•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이슈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 동작아이존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 <신 설> 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 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 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을 말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 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는 데 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 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을 준 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 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 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다. <신 <u>설></u>

<신 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 |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 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 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 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 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 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 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 복지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탁 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 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부 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 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 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 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탁자 선 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 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관리 · 운영 위탁기 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원 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 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 동 해산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 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를 취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 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 · 감 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 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 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

<신 설>

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 간이 종료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 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 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9조 (생략)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에 따라 시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위원 회의참석 수당. 운영비 등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규정〉

제3조 ①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첚부 사유

- 수탁자 선정심의원회는 시립시설 위탁 만료시 또는 신규 시립시설 위탁시에 개 최되는 비상설위원회이며,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 당 및 위원 수를 감안하여 비용 추계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10억 미만에 해당함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 · 기본료: 100,000원
- · 초 과 : 50,000원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비용 추계〉

- ·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수 : 9명(공무원 포함)
- · 시립사회복지시설 수 : 83개
- ⇒ 시립사회복지시설이 한 해에 위수탁을 일제히 갱신하는 경우(최대비용소요 가정 시)

150,000원 × 83개 × 9명 = 112,050천원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행정6급, 김분년 주무관(T.2133-7334)